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조 용 훈(한남대학교 교수)

- I. 서 론
- II.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
- III. 학문의 자유의 침해 요인들
- IV. 학문의 자유의 윤리학적 토대
- V.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에서 학문의 자유
- VI. 맺는 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in thoughts of academic freedom and their histor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Academic freedom refers to the freedom of scholars to study, teach and publish without being subject to or causing undue interference. Academic freedom is essential to the 'function of truth' of the universities. Without academic freedom, not one scholar or university can function properly and realize its goal for truth.

Threats to the promotion of academic freedom come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the academy: political ideology, religious dogmatism, ideologically conservative journalism, commercialism and indifference of members of academy.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universities and the theological seminaries in Korea show that academic freedom was mainly limited, due to the religious dogmatism. Because of theological thoughts, the religious dogmatists, connected with religious power elite, banished theologians unlawfully from the universities.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versities, we,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academic freedom, should be conscious of its importance for scholarship, and be ready to commit ourselves to protect it against adversaries within and outside the academy. Also, we should make efforts to build the ecclesiastical judicial proceedings for academic freedom, in order that it operate fairly and reasonably.

Key words : academic freedom, political ideology, religious dogmatism, commercialism, theology and church

I. 서론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학문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다. 그런데 학문의 진보와 발전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사고할 수 있을 때라야 지적 탐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존 듀이(J. Dewey)는 학문의 자유를 지적 자유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자유로 보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자유사회의 근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까지 말했다.¹⁾

하지만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줄지 않고 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를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소로는 국가권력(혹은 정치 이데올로기)이나 종교단체(종교적 도그마), 혹은 기업(상업성)을 들 수 있다. 내적 요소로는 대학구성원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무관심과 침해 행위를 들 수 있겠다.

미국 대학의 경우 1915년 미국대학교수협의회(AAUP)가 발족되면서부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다루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 매카시즘에 의한 교수들의 해직사태를 경험하면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²⁾ 한편, 종교 교리적 이유로 강단에서 추방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s Kueng)이나 미국의 가톨릭 신학자 찰스 쿠란(Charles Curran) 사태에 대한 연구도 있다.³⁾

1) 김정인,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교수노조 외 4개 학술단체,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발표집, 2005, www.demos.or.kr

2) Hofstadter, R./Metzger, W. P., *The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3) Curran, Charles, E., *Catholic Higher Education, Theology and Academic Freedom*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Witham, Larry, *Curran Vs. Catholic University: A Study of Authority and Freedom in Conflict* (Riverdale, MD: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역사가 짧은데다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부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빈약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주제로 한 연구가 양과 질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 최근 들어서 기독교대학에서는 물론 신학교에서도 신학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들의 신학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교리나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문제 삼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해임시킴으로써 신학자들의 학문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물음을 기독교윤리학적 시각에서 다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째, 학문의 자유가 왜 학문생활에 중요한가? 둘째, 학문의 자유란 무엇이며, 구성내용, 그리고 위협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윤리적 토대는 무엇인가? 넷째,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실에서 신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II.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

1. 학문의 자유란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그 이유는

Edington-Rand, Inc., 1991); Kueng, Hans, *My Struggle for Freedom: Memoir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2003).

4) 학문의 자유를 주제로 한 일반 연구서는 박덕원의 『대학과 학문의 자유』(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2000)가 대표적이다. 신학분야에서는 정재현, 「학문의 자유와 신학하기」, 연세대 신학과, 『신학논단』 51, 2008가 있으나 윤리적 분석이 아니라 신학함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있다.

학문의 자유가 논의되는 상황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교수의 재임용과 승진에 관련된 논쟁이나, 학생의 시위행동, 혹은 교수의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학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학문의 자유를 해석하며 주장한다. 이처럼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자유란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근본적인 요소로서, 학자가 외부의 어떠한 간섭 없이 학문적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킨다. 학문의 자유는 좁은 의미에서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그리고 교수(가르침)의 자유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의 자치까지를 포함한다. 대학이사회나 국가권력의 위협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대학교수협의회(AAUP)는 ‘원칙선언문’(The Declaration of Principles)에서 탐구의 자유, 교수(teaching)의 자유, 그리고 대학 바깥에서 발표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원칙선언문은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했다:⁵⁾ 첫째, 부당한 해임이나 징계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을 판결할 권한을 지닌 독립된 기구의 설립. 둘째, 같은 방법으로 대학의 관리자들과 행정부서를 보호함. 셋째, 교수정년보장제(tenure)의 제도화.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의 자유를 명확한 개념으로 확정하고, 학문공동

5) 박덕원, 『대학과 학문의 자유』(부산외국어대학출판부, 2000), 64~68.

체인 대학의 이념으로 뿌리내린 것은 자유와 고독을 내세우며 1810년에 설립된 독일 베를린 대학이었다.⁶⁾ 학문의 자유를 강조했던 독일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교수들의 ‘교수의 자유’(Lehrfreiheit)와 대학생의 ‘학습의 자유’(Lernfreiheit)로 구분해서 이해했다. 교수의 자유란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의 자유를 가리킨다. 한편, 학습의 자유란 대학생들이 이 대학 저 대학을 옮겨가면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인 독일의 독특한 상황에서 생겨난 제도다. 상황이 다른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를 선택과목제도를 통해 구현하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내용을 대학교수의 자유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누리는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제도화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율권이 포함되기도 한다.⁷⁾

첫째, 연구의 자유란, 학자가 연구 과제,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연구의 자유는 내면적 자유이므로 연구 과정에 있어서 국가는 물론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간섭이나 방해로 받지 않을 절대적 자유권에 속한다.

둘째, 연구발표의 자유란, 학자가 학문적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연구발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정신적 자유의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학문 활동이 학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을 발표하는 것 역시 연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6) 이광주,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총』 1집, 1994, 102.

7)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법문사, 2008), 541~543.

이유에서 연구발표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⁸⁾

셋째, 교수의 자유(Lehrfreiheit)란, 학자가 교수내용, 교수방법, 교재선택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리킨다. 연구의 자유는 침해받을 위험성이 크지 않고, 대학 밖에서 연구 발표의 자유는 교수들이 일반 시민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에 해당하는 반면에 교수의 자유는 대학의 교수에게만 허용되는 자유라 보기도 한다.⁹⁾

넷째, 학문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서, 이는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하기 위한 집회나 단체를 개최하고 설립할 자유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학회, 학술단체, 학술세미나, 학술강연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수 있는 자유다.

다섯째, 광의의 의미에서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율권도 포함된다. 대학의 자율권이란, 학문의 자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학의 제도적 장치로서 대학이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임용하는 데서 누리는 자유를 가리킨다.

III. 학문의 자유의 침해 요인들

1.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는 다른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념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이며 억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 일찍이 191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어린이 노동에 반대했던 스콧 니어링(S. Nearing)교수의 해고사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반대한 교수들에 대한 남부 대학들의

8) 김종서,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26, 2004, 88.

9) 박덕원, 『대학과 학문의 자유』, 65.

억압적 조치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한 교수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1949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충성서약(Loyalty Oath)¹⁰⁾을 반대한 교수들의 집단적 해고, 그리고 1950년대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매카시즘 아래 각 주립대학에서 공산주의 혐의를 받은 교수들과 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교수들의 해고와 같은 수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¹¹⁾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약 반세기 동안은 고등교육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수난기라 하겠다.¹²⁾ 독일에서는 나치즘 아래 비판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많은 교수들이 대학에서 추방되고 외국으로 망명을 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제국주의 시대에 대학구성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파시즘에 비판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교수들 수십 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대학들이 여러 해 폐쇄되는 억압이 행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이유에서 늘 위협을 받아 왔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발표는 종종 반체제운동이나 이적(利敵)행위로 간주되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공공연한 학원사찰과 정권비판적 교수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금서목록이

10) 주요 내용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것, 과거나 현재에 정부를 타도하고자 하는 파괴적인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 그리고 공산당원이 아님을 서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약을 거부하는 교수들을 해임함으로써 인해 대학교수의 학문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었다. 이혜숙, 「미국대학의 학문의 자유의 수용과정」, 『교육법학연구』 3.4호, 1992, 164.

11) 임진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동국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8호, 1993, 29~30.

12) 박덕원, 『대학과 학문의 자유』, 138.

교육당국으로부터 하달되기도 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 1977년 『8억 인과의 대화』가 중국공산당을 찬양하고 고무한다는 이유에서 구속된 리영희 교수사건, 1988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론을 주장한 충북대 서관모 교수사건, 1991년 『사회주의 이론, 역사, 현실』을 편집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4명 구속사건, 1994년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장상환, 정진상 교수 기소사건, 1995년 『빨치산 역사기행』으로 구속된 방송통신대 김무용 강사 사건, 1997년 초등학교생용 통일교육 교재인 『나는 야 통일 1세대』의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기소사건, 1997년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광주대 박지동 교수 구속사건, 2005년 ‘통일전쟁’의 논리를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사건 등이 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유신정권 때에 안병무 교수, 서광선 교수, 현영학 교수, 서남동 교수, 문동환 교수 등이 정치적 이유에서 각각 대학으로부터 해직되었다.

2. 종교적 교조주의

종교적 교조주의(Dogmatism)란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교리에 맹목적으로 얽매어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독단적 태도를 가리킨다. 대학이 출현한 중세에는 모든 대학이 기독교대학이었고 이성이 신앙의 경계를 넘을 수 없었기에 학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종교가 재가하는 범위 안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의 발전시기를 지나면서 종교와 학문이 갈등하게 되었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갈릴레이 갈릴레오 재판이나 조르다노 브루노 화형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에 들어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초기 미국 대학들에 있어서도 학문의 자유는 종교적 이유에서 제한되곤 했다. 교단이 다르다고 대학

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 교파를 바꾸었다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¹³⁾ 20세기 초에는 유럽으로부터 진화론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근본주의 신앙인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대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던 교수들이 수난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밴더빌트 대학의 알렉산더 윈첼(A. Wintchell)교수와 예일 대학의 섬너(W. G. Sumner) 교수를 들 수 있다.¹⁴⁾ 최근에도 교리적 이유에서 미국 가톨릭 신학자 찰스 쿠란(Charles Curran)이나 독일 신학자 한스 쿵(Hans Kueng), 오이겐 드레버만(E. Drewermann)같은 신학자들이 대학에서 강의가 금지되거나 추방되었다.

3.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

우리사회에서 언론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과의 야합을 통해서 막강한 정보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파워엘리트 집단의 하나로 성장했다. 보수적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보수언론은 정치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변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압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다음 사건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988년 조선일보가 학단협 연합심포지엄 발표논문인 ‘중간 세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를 문제 삼아 서관모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사건. 1993년 『월간조선』이 한완상 교수의 ‘한국전쟁과 한국사회의 변동’이란 논문을 문제 삼아 통일원 장관에서 물러나게 함. 1997년 『나는 야 통일 1세대』를 문제 삼은 『월간조선』의 기사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희 교수사건. 1998년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란 논문을 문제 삼은 『월간조선』의 사상검증으로 김대중 대통령자문정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13) 이형행, 「학문의 자유」, 『현상과 인식』 2집, 1978, 139.

14) 위의 책, 140~141.

물러난 최장집 교수사건, 2001년 ‘만경대 정신’이란 필화사건의 강정구 교수, 2003년 37년 만에 독일에서 귀국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그 동안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비록 정치사상이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사건의 발단이나 전개가 보수언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4. 정부와 기업의 연구기금을 통한 간접적 통제

과거 우리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는 독재정부나 보수언론, 그리고 종교적 교조주의에 의한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지원이나 연구기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연구기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학문의 자유를 대가로 치른다.

먼저, 정부의 연구기금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지식의 정치화’에 이용되곤 한다. 그 예로, 유신정권 시절에는 유신헌법연구, 관변운동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 국가안보정책을 위한 법 연구, 그리고 각종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연구주체에 연구기금이 집중되었다.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순수한 학문지원이 아니라 대학이나 학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흰하다.

한편, 기업의 연구기금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식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연구기금은 대부분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지식이 상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할 위험성이 있다. 한 예로 2007년 서울대, 전남대, 가톨릭대 임상시험 센터가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

서널의 연구 용역 10억 원을 받아 연구하다가 사회문제가 되자 철회한 사건이 있다.¹⁵⁾ 대학교수가 진리에 대한 순수한 탐구 대신에 금전적 목적에 관심하게 될 때 학문의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왜곡되고 파괴될 것이다.

5. 대학 구성원에 의한 침해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는다. 맥카이버(R. M. MacIver)도 지적했듯이, 오늘날 학문의 자유는 외적 침해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위장된 방법을 통해서 더 큰 위협을 받는다.¹⁶⁾ 내부적 요인이 더 위협적인 이유는 교수들이 외부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저항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간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일치된 관심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부적 요인 가운데에는 우선 과격한 학생운동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정치적 혼란과 1980년대 학원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과격한 학생들에 의해 정치사상적 견해를 달리하는 교수들이 ‘어용교수’나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최근에는 교육내용이나 학점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교수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도 학생들에 의해서 교수의 학문의 자유가 제약되는 일이 있었다. 1977년 조선대 임영천 교수의 강의내용을 학생들이 문제 삼아 반공법과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47년에는 김재준 목사의 신학 경향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학생 51명이 그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비난하며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15) 김동광, 「담배회사 돈으로 담배 유희성 연구?」, 『한겨레21』 669호, 2007.7.20.

16) 박덕원, 「학문의 자유와 테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대논총』 13집, 1995, 458.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수를 임용하는데 있어서 법적 권한을 지닌 이사회가 전횡적인 인사행정이나 부당한 재임용 거부, 해직의 형태로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대학의 외부 세력보다는 이사회나 총장과 같은 대학 내부 세력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V. 학문의 자유의 윤리학적 도대

1. 학문의 자유가 지닌 윤리적 특성

학문의 자유에서 ‘자유’가 지니는 윤리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학문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란 학자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무조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⁷⁾ 한 예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인정되지만 발표장소나 대상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교수가 정치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으나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특정 정당의 선전 행위와 같은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학문의 자유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리탐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진리의 기능에 역행하는 학자에게 학문의 자유란 자유의 남용이다.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학문활동에서 표절이나 사회생활에서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사회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

17) Diekma Anthony, *Academic Freedom & Christian Scholarship*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4.

항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찍부터 학문의 자유를 옹호했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조차 연구의 자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의무’와 ‘위험한 연구결과를 알릴 의무’가 속한다.¹⁸⁾

셋째, 학문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 지금까지 학문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었지만 학자들이 학문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만 모든 학문활동과 예술활동이 모험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것을 섬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을 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학문의 자유란 학자 개인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특권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진리탐구를 통해 학생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2. 학문의 자유가 지닌 법적 특성

학문이란 인간 정신의 귀중한 성과요 인류문화의 집중적 표현이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학문의 발전이 자유로운 토의와 연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종교인이 학문의 진보나 새로운 발견을 반대하거나 박해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²⁰⁾

비록 학문의 자유가 성문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

18) 박은정, 「생명공학과 연구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당대, 2001), 79.

19) 박덕원, 『학문의 자유와 테뉴어』, 452.

20)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540.

서 매우 중요하게 인정되어 온 자유다. 비록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가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효력을 지니려면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학문의 자유가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8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제152조)이었고, 이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제141조)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²¹⁾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설이 있다 :²²⁾ 첫째, 제도보장설로서, 학문의 자유가 연구자들 간에 혹은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협동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적 기본권설로서, 학문의 자유를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학문 연구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결합설로서, 국가와 대학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과 동시에 개인적 기본권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결합설은 학문의 자유가 학자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대학의 자율권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고, 31조 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21) 계희열, 「헌법상 학문의 자유」, 『고시연구』 296, 1998. 11, 15.

22) 손희권, 「학문의 자유에 관한 교육 관례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6, 1998, 237~238.

3. 학문의 자유의 한계

학문의 자유는 교수가 학문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유임에 틀림없다. 1915년 미국에서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설립되고 선언문을 발표한 우선적인 이유도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후 1940년 발표된 ‘원칙에 관한 수정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의 자유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²³⁾ : 첫째, 교수의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학 바깥에서 기금을 받고 행하는 연구는 사전에 대학당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둘째,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는 자유이지만 강의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교수의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예를 들면, 학자의 발언은 늘 정확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이 대학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교수가 누리는 학문의 자유는 학생들이 누리는 학습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학생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로서 교수의 수업거부나 태만행위로 말미암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이다.

한편,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그가 속한 대학공동체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한 예로, 종교법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의 경우 종교적 건학이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문의 자유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그 경우에 대학은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법해야 하며, 해당자에게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자유시민적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학문의 자유를

23) 박덕원, 『대학과 학문의 자유』, 72~74.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학문의 자유 가운데 연구의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이므로 절대적 자유권에 속한다. 하지만 연구결과와 발표나 교수(가르침)의 자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본다. 또,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기타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학문연구 활동을 병자하여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또는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학문 연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적성(利敵性) 여부에 두고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것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판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²⁴⁾

학문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법률에 따라 학문의 자유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자들의 자율적 통제에 맡겨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²⁵⁾

24) 김정인,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교수노조 외 4개 학술단체, 『국가보안법과 강령 구교수 필화사건』 발표집, 2005, www.demos.or.kr

25)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2판(박영사, 2006), 418~419.

V.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실에서 학문의 자유

1.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학문의 자유 침해와 윤리적 쟁점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신학적 견해 차이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장로교회의 경우 1934년 제23회 총회에서 김영주 목사가 모세의 창세기 저작설을 부인한 것과 김춘배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권(女權)에 대해 진보적 해석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해 열린 장로교 총회는 김영주 목사에 대해 “신조 제1조에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고 결의 하였으며, 김춘배 목사의 여권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자 교권이 전연 용허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은 권징조례 제6장 제42, 43조에 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주 목사와 김춘배 목사는 자신의 견해를 취소하는 석명서(釋明書)를 발표해야 했다.²⁶⁾ 1935년에는 감리교가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유형기목사의 책임 아래 『아빙돈 단권주석』을 번역, 출판하게 하였다. 이 일에 참여했던 장로교의 김재준, 채필근, 송창근 교수 등이 교단으로부터 교리 위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김재준과 송창근 목사는 이러한 요구가 신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저항하였다.

한편, 1992년 감리교신학대에서는 변선훈 교수와 홍정수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출교’형을 받고 해직되었다. 1990년 11월 24일 가톨릭문화원이 주최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화모임’에서 변선훈 교수가 ‘불타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2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64~265.

되었다. 여기서 변선환 교수는 개종을 목표로 하는 개신교의 선교가 보편적이고 다원적인 선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정수 교수는 1991년 3월 30일 <크리스찬 신문>의 부활절 특별기고문에서 포스트모던 신학을 “과학의 지배에서 벗어나 종교언어로서의 독자성을 회복하려는 신학운동”이라 정의했다.²⁷⁾ 이에 대하여 감리교단은 1991년 10월 특별총회에서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신학이 감리교의 신앙과 교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1992년 5월 7일 재판위원회에서 두 교수는 유일한 구세주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사건과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죄되고 출교 판결을 받았다.

한편, 2003년 강남대 이찬수 교수는 종교다원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와 관용을 주제로 한 EBS방송 프로그램 ‘뜰레랑스’(제목 : “단군상, 이성과 우상의 경계에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대웅전 본전불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 이찬수 교수는 타종교에 대한 예의표시로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한 것이었지만, 방송을 본 기독교 단체가 대학에 압력을 넣음으로 문제가 되고 말았다. 결국 2006년에 ‘강의내용과 행동이 기독교적 창학이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직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대학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이찬수 교수 편을 들어주었지만 대학당국은 이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²⁸⁾

27) 김주덕, 「한국교회 분쟁의 요인분석: 1992년 감리교의 ‘종교재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2007, 228.

28) “현대판 종교재판에 명드는 사학” 시리즈, 오마이뉴스, 2006년 9~11월(www.ohmynews.com).

2. 학문의 자유를 위한 교회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변선환과 홍정수, 그리고 이찬수 교수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물론 그 피해는 학자 자신의 개인적 고통만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라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학문의 주체인 대학교수의 신분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하자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교수가 그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비록 대학교수가 자기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서조차도 ‘적정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증거를 제출하고, 해당 교수에게는 청문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관련해서 발생한 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교회법이나 일반 법률제도의 엄격성이나 재판제도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다.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두 사건 모두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신학사상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토론이 없이 몇몇 재판위원과 교계지도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판위원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법적 조항도 불분명했다. 현재와 같이 종교재단의 교리나 내규가 재판의 법적 근거가 될 때에는 언제든지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서 피고의 변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²⁹⁾ 재판부는 판결의 오판 가능성을

29) 김주덕, 「한국교회 분쟁의 요인분석: 1992년 감리교의 ‘종교재판’을 중심으로」, 『한국기

인정하여 뒤늦게라도 침해된 인권과 신분의 회복을 위한 예비 장치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³⁰⁾

이러한 문제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교수가 지니는 절차상의 권리만으로는 교원의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점이다.³¹⁾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나 행정법원의 결정 자체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인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수가 권리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민사법원에서 교원지위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교수의 학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3. 학문의 자유를 위한 신학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신학과 교회는 창조적 긴장 가운데서 상호 보완적일 때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다. 신학이 없는 목회나 교회와 무관한 신학은 둘 다 불완전한 것이다. 교회와 신학이 상호 생산적이 되기 위해 신학자는 ‘연구하는 목회자’로, 목회자는 ‘목회하는 신학자’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³²⁾

『독교와 역사』 27, 2007, 230~231.

30) 실제로 가톨릭교회는 2000년에 갈릴레이 갈릴레오나 조르다노 브루노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시인하며 ‘참회의 해’로 선포했다.

31) 임재홍, ‘사학의 ‘책임용 남용’, 브레이크가 없다, 오마이뉴스 기획특집, “현대판 종교재판에 명드는 사학” 14, 2006년 11월 21일자.

이러한 전제 아래 교회는 신학이 하나의 학문활동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학이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학문성을 지녀야 한다. 신학적 진술이 보편타당한 진리로 인정되려면 합리적 논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신학의 연구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신학은 일반 학문과 확연히 다른 점도 사실이다.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과학자와 달리 인격적 관계에서 수행되어진다.³²⁾ 그리고 신학의 연구 대상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신학은 학문적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 어떤 학자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기에 신학은 어쩔 수 없이 개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신학은 다른 신학적 입장이나 교회 현실을 비판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신학자들은 교리주의자들이나 문자주의자들과 어쩔 수 없는 갈등관계에 놓인다.

한편, 신학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학문과 다르다. 신학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칼 바르트(K. Barth)에 따르면, 신학의 과제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이야기가 교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를 검증하는 데 있다.³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의 연구과제는 교회의 선포가 성서의 계시와 일치하는지 살피는데 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신학'이란 의미가 '교회의 시녀로서의 신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학은 교리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교리를 비판하며, 성서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만족하지는 않는다. 신학자는 교회의 현실을 이해해야 하지만, 교회에 이부하는 신학이 되어선 안 된다.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라면, 신학자는 오로지

32) 최성수, 「신학과 목회의 관계로 보는 '신학의 학문성」, 『목회와 신학』 194, 2005, 173.

33) 김균진,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45, 1984, 312~313.

34) 위의 책, 316.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 신학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학은 해방적 역할보다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³⁵⁾

VI. 맺는말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본질적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남용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서라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함, 방법 역시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 학자들이나 학계의 자율적 제한이어야 한다. 이는 학문이 전문영역이며, 학문의 자유의 남용을 전문가인 학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는 윤리강령과 같은 자율적 규제의 원칙에 따라 고의로 진리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학문은 둘 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신비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와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학문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신학과 교회는 각각 발전할 수 있었다. 교권자들에 의한 신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학자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으로서 신학이 전통교리를 되뇌이는 과정이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라면 학문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35) Jose L. Segundo, *The Liberation of Theology* (N. Y: Orbis Books, 1976), 39.

만일 학문공동체인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무엇보다 대학의 구성원들 자신에게 있을 테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할 소명 역시 그들의 몫이다. 학문의 자유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대학의 제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의 주체인 학자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쟁취된다. 중세에 대학이 설립된 이후 대학은 줄곧 교황과 황제 사이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학문의 자유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참고문헌

- 계희열, 『헌법상 학문의 자유』, 『고시연구』 296, 1998. 11.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법문사, 2008).
- 김균진,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45, 1984.
- 김동광, 『담배회사 돈으로 담배 유해성 연구?』, 『한겨레21』 669호, 2007. 7. 20.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김중서, 『송두울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26, 2004.
- 김정인,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교수노조 외 4개 학술단체,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발표집(2005), www.demos.or.kr.
- 김주덕, 『한국교회 분쟁의 요인분석: 1992년 감리교의 ‘종교재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와 역사』 27, 2007.
- 박덕원, 『학문의 자유와 테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대논총』 13집, 1995.
- _____, 『대학과 학문의 자유』(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0).
- 박은정, 『생명공학과 연구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당대, 2001).
- 손희권, 『학문의 자유에 관한 교육 판례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6, 1998.
- 이광주,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
문사회과학논총』 1집, 1994.
- 이혜숙, 『미국대학의 학문의 자유의 수용과정』, 『교육법학연구』 3.4호, 1992.
- 이형행, 『학문의 자유』, 『현상과 인식』 2집, 1978.
- 임재홍, 『사학의 재임용 남용, 브레이크가 없다』, 오마이뉴스 기획특집, “현대판 중
교재판에 멩드는 사학” 14, 2006년 11월 21일자.
- 임진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동국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
구』 8호, 1993.
- 정재현, 『학문의 자유와 신학하기: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준거로 하여』, 연세대신
학과, 『신학논단』 51, 2008, 75~107.
- 최성수, 『신학과 목회의 관계로 보는 ‘신학의 학문성’』, 『목회와 신학』 194, 2005.
-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2판(박영사, 2006).

- Curran, Charles. E., *Catholic Higher Education, Theology and Academic Freedom*(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 Diekma, Anthony, *Academic Freedom & Christian Scholarship*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2000).
- Hofstadter, R./Metzger, W. P., *The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 Kueng, Hans, *My Struggle for Freedom: Memoir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2003).
- Segundo, Jose L. *The Liberation of Theology* (N. Y: Orbis Books, 1976).
- Witham, Larry, *Curran Vs. Catholic University: A Study of Authority and Freedom in Conflict* (Riverdale, MD: Edington-Rand, Inc., 1991)

논문투고일 : 2009. 09. 22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23

• 국 문 초 록 •

모든 학문의 진보와 발전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사고할 수 있을 때라야 지적 탐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넓게는 대학의 자율권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대학 안팎에서 발생한다. 먼저, 대학 외적으로 보면, 국가 이데올로기, 종교적 교조주의, 보수적 언론에 의한 여론재판, 정부와 기업의 연구기금을 통한 간접적 통제, 그리고 대학 내적으로는 대학 구성원의 무지나 무관심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

학문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이며, 더 나아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지닌 자유다. 한편, 학문의 자유는 한계를 지니는 데, 여기에는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에 의한 제한, 국가의 법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에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어 교수들이 해직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문자체만이 아니라 교회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어 학자들이 부당 해직되는 사건들과 관련된 교회법적 제도와 절차,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신학과 교회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주제어 : 학문의 자유, 정치이데올로기, 종교적 교조주의, 연구기금, 신학과 교회
